삼 척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보

선람	기 관 의 장

제1014호 2018. 4. 13.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규 칙

○ 삼척시 규칙 제555호 삼척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 2
○ 삼척시 규칙 제556호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 4
○ 삼척시 규칙 제557호 삼척시 리·통·반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 6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51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7

공람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2018년 제5회 삼척시 조례·규칙 심의회(2018. 3. 29.)에서 의결된 삼척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 척 시 장

2018년 4월 13일

삼척시 규칙 제555호

삼척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삼척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제136조”를 “제140조”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14까지에”를 “제11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본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 호에 따른”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7일 이내에”를 “조사 개시 전까지”로 한다.

제18조 중 “조사기간은 최소한의 범위에서”를 “대상자별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84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중 “변호사 등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세무공무원”을 “조사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99호서식”을 “별지 제426호서식”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무공무원”을 “조사공무원”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73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조사결과의 통지를 하고자 하는”을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으로, “징수권”을 “지방세징수권의”로, “3월 미만”을 “3개월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폐업으로 인하여”를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제32조제1항 중 “법 제136조”를 “법 제140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8년 제5회 삼척시 조례·규칙 심의회(2018. 3. 29.)에서 의결된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 척 시 장

2018년 4월 13일

삼척시 규칙 제556호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제1항 중 “반환”을 “환급”으로,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및 삼척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지방세기본법 및 삼척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2항 중 “과태료·과징금”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를 “징수”로, “개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를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실장과 통합지출관”으로, 제2항 중 “세무과장은”을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 징수종합계획서와”로, “통합지출관·본청”을 “본청”으로 하고, 제3항 중

“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51조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1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1조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8년 제5회 삼척시 조례·규칙 심의회(2018. 3. 29.)에서 의결된 삼척시 리·통·반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 척 시 장

2018년 4월 13일

삼척시 규칙 제557호

삼척시 리·통·반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삼척시 리·통·반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고시 제2018 - 51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4. 13.

삼 척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강원남부로 2793 외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 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4. 1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171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강원남부로 2793	20180413	건물신축	20090807	지역적 특성반영	
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리 305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284-44	20180413	건물신축	20090626	역사인물이승휴의호(동안)활용	
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222-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989	20180413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기존도로명활용	
4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37-14, 36-1, 37-2, 37-15, 37-16, 37-37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427 (남양동)	20180413	건물신축	20090626	지형지물(오십천)명칭활용	
5	강원도 삼척시 도경동 254-1	강원도 삼척시 도경길 241-9 (도경동)	20180413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기존도로명)	
6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353-4	강원도 삼척시 사직로2길 16-6 (남양동)	20180413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적용(사직로분기)	
7		이	하	여	백		
8							
9							
10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6 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171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강원남부로 2793	20180413	건물신축	20090807	지역적 특성반영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리 305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284-44	20180413	건물신축	20090626	역사인물이승휴의호(동안)활용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222-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989	20180413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기존도로명활용	
부여	4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37-14, 36-1, 37-2, 37-15, 37-16, 37-37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427 (남양동)	20180413	건물신축	20090626	지형지물(오십천)명칭활용	
부여	5	강원도 삼척시 도경동 254-1	강원도 삼척시 도경길 241-9 (도경동)	20180413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기존도로명)	
부여	6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353-4	강원도 삼척시 사직로2길 16-6 (남양동)	20180413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적용(사직로분기)	